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유형별 분법체계 전환에 따라 그간 문화재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자연유산의 조사·심의를 수행하게 될 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에 자연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자료가 신설됨에 따른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을 규정(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13까지)

- 1) 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회의 회의 및 소위원회, 전문위원 정수 및 위촉,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
- 2)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 등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

(안 제5조의10, 제5조의11)

3)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공개 사유를 정함(안 제5조의12)

4)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13)

나. 법률에서 신설된 자연유산위원회와 자연유산자료 및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를 반영함(안 제2조제3호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5조의13까지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5조의5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5조의5까지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4(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7.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 제5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의6(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

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의7(전문위원) ①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문위원이 제5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8(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의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10(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5조제1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2. 지질·지형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3. 명승·전통조경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및 제9호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 다만,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5조제1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의3부터 제5조의6까지, 제5조의8 및 제5조의9를 각각 준용한다.

제5조의11(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의3부터 제5조의6까지, 제5조의8 및 제5조의9를 각각 준용한다.

제5조의1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13(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각각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각각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각각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시·도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3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제4항 중 “시·도자연유산은”을 “시·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

회나 자연유산위원회”로 하며, 제4항제1호 중 “문화재위원회”를 각각 “문화유산위원회나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명령에 대한 문화유산위원회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도 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2항제1호”를 “제7조제2항제1호, 제1호의2”로 한다.

제14조의3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4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시·도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별표 2의 II. 개별기준 제5호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의 II. 개별기준 제2호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문화재청장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문화재청장이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이나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하고,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④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매장유산분과위원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궁능유산분과위원회: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8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위원	3.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5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u> <u>①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5조의13까지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5조의5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 <u>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u>

<신 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5조의5까지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 설>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4(위원의 해촉) 문화재청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7.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신 설>

제5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

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5조의6(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
나.

<신 설>

제5조의7(전문위원) ① 법 제7조

의2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
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
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
문화대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

<신 설>

<신 설>

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
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
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
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문위원이 제
5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8(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
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의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

<신 설>

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5조의10(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
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5조제12호의 궁능유산
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하
다.

2. 지질·지형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및 「매
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매
장유산에 관한 사항

3. 명승·전통조경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및 제9호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 다만,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5조제12호의 궁능유산 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신 설>

<신 설>

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의3부터 제5조의6까지, 제5조의8 및 제5조의9를 각각 준용한다.

제5조의11(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의3부터 제5조의6까지, 제5조의8 및 제5조의9를 각각 준용한다.

제5조의1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13(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생략)

제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연유산위원회-----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자연유산위원회-----

-----.

⑤ -----

자연유산위원회-----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략)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15조(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② -----

-----자연유산위원회-----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자연유산위원회-----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

-----자연유산위원회-----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
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
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
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법 제18
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의 해당 분야 위
원 또는 전문위원

2. 시·도문화재위원회의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 7. (생략)

제33조(허가사항에 대한 천연기념
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①
(생략)

②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자연유산위원회

--.

④ -----

자연유산위원회-----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

1. 자연유산위원회-----

2. 시·도자연유산위원회-----

3. ~ 7. (현행과 같음)

제33조(허가사항에 대한 천연기념
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성격상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에 대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시·도자연유산은 제외한다)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유산수리업자·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시·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는-----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연 락 처	(042) 481 - 4981